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7

서울특별시장

0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산설	시장	강남구 반포동 1141입대	5,871.6	

0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도시시설계획과장)

제 목 관 음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별첨과 같이 결정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 4 안

수 신 총무처장관
제 목 관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고시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라. 게재내용 : 별첨 고시문'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제 5 안
수 신 강남구청장(도시정비과장)
제 목 같 음
1. 도정30314-33284호(85.9.3)관련임
2. 위호로 요청한 도시계획시설(시장)이 별첨과 같이 결정 되었기 통보하니 관저도면정비 및 관련과에 알리어 도시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하길
3.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을 귀구 <del>발출</del> 지적도와 지적선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시행하고 그결과를 지적과장에게도 별도 회신토록 할것이며
4. 사업시행어가시는 타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전에 필요한 관계법 절차를 이행후 허가토록할것이며 별첨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사업시행어가시 반영토록 할것

첨부	1.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2. 교통영향평가 결과 1책. 끝.
제 6 안	- 28
수 신	지적과장
제 목	갈 음
	1. 우미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 강남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적승인은 구정보유 지적도와 부합여부를 확인 시행후 지적과장 참조 별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신보통 지시
	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제 7 안	- 28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갈 음
	1. 우미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상공과장, 건축지도과장.

1374

